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채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 중 200명(7급 20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준정원 2명(7급 2명)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기준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로 각각 이체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운영정원 4명(8급 4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

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9년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16호 중 “비정규직”을 “근로시간 및 비정규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을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287명”을 “487명”으로, “125명, 8급”을 “325명, 8급”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652”를 “654”로, 일반직 계 “645”를 “647”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1”을 “52”로, 행정주사 “66”을 “67”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3”을 “655”로, 일반직 계 “646”을 “648”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1”을 “52”로, 행정주사 “52”를 “53”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008”을 각각 “9,008”로, 행정주사 “1,123”을 “1,280”으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99”를 “598”로,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04”를 “198”로, 행정주사보 “1,239”를 “1,397”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

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00”을 “72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5”를 “183”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9”를 “93”으로, 행정서기 “486”을 “58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적용일자: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4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신설하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 총계 및 일반직 계 “8,007”을 각각 “9,007”로, 행정주사 “1,123”을 “1,28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99”를 “598”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04”를 “198”로, 행정주사보 “1,239”를 “1,39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00”을 “72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5”를 “183”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9”를 “93”으로, 행정서기 “486”을 “586”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016”을 각각 “9,016”으로, 행정주사 “1,030”을 “1,187”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99”를 “598”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04”를 “198”로, 행정주사보 “1,224”를 “1,382”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

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00”을 “72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5”를 “183”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9”를 “93”으로, 행정서기 “557”을 “657”로 한다.

별표 11의2 [적용일자: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4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신설하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 총계 및 일반직 계 “8,015”를 각각 “9,015”로, 행정주사 “1,030”을 “1,187”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99”를 “598”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04”를 “198”로, 행정주사보 “1,224”를 “1,382”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00”을 “72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5”를 “183”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9”를 “93”으로, 행정서기 “557”을 “657”로 한다.

별표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다음에 “8”을 신설하고, 서기관 다음에 “7”를 신설하며, 170 다음에 “34”를 신설하고, 34 다음에 “136”를 신설하며, “33”를 삭제하고, “137”를 삭제하며, 117 다음에 “12”를 신설하고, 12 다음에 “105”를 신설하며, “14”를 삭제하고, “103”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650명 (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10)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350명 (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20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한시정원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8조 및 별표 20과 관련한 한시정원에 관하여는 2026년 4월 13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432	101	331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431	100	33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70	34	13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117	12	10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7	2	5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8	1	7
행정전문관	4	4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432	101	331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431	100	33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71	35	13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120	15	10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17		17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7	2	5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8	1	7
행정전문관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⑦ (생략)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15. (생략) 16. 사업장 정기감독(<u>비정규직</u>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및 청원에 의한 수사감독 계획의 수립·시행 16의2. ~ 22. (생략) ⑨ ~ ⑫ (생략)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 ----- -----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u>근로시간</u> <u>및 비정규직</u> ----- ----- ----- 16의2. ~ 22.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

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
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
다.

1. 2. (생략)

3.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4. ~ 21. (생략)

⑭ ~ ⑰ (생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
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
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
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
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
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

-----.

1. 2. (현행과 같음)

3. -----

-----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
보건-----

4. ~ 21. (현행과 같음)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

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고, <u>287명</u>(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 명, 6급 125명, 7급 <u>125명</u>, 8급 2 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u>제28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u> <u>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u> <u>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u>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u> <u>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u> <u>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u> <u>다.</u>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1의 정원 8 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u>2026년 4월 12일까지</u> 존 속한다.	----- ----- <u>487명</u>----- ----- ----- <u>325명, 8급</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u> <u>원의 존속기한)</u> ----- ----- ----- ----- <u>2029년 4월 12일</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2</u>	<u>654</u>	+2
·	·	·	
·	·	·	
일반직 계	<u>645</u>	<u>647</u>	+2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u>51</u>	<u>52</u>	+1
·	·	·	
·	·	·	
행정주사	<u>66</u>	<u>67</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3</u>	<u>655</u>	+2
•	•	•	
•	•	•	
일반직 계	<u>646</u>	<u>648</u>	+2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u>51</u>	<u>52</u>	+1
•	•	•	
•	•	•	
행정주사	<u>52</u>	<u>53</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008</u>	<u>9,008</u>	+1,000
일반직 계	<u>8,008</u>	<u>9,008</u>	+1,000
·	·	·	
·	·	·	
행정주사	<u>1,123</u>	<u>1,280</u>	+157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99</u>	<u>598</u>	+199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104</u>	<u>198</u>	+94
·	·	·	
행정주사보	<u>1,239</u>	<u>1,397</u>	+158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500</u>	<u>720</u>	+220
•	•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u>155</u>	<u>183</u>	+28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 전주사보	<u>49</u>	<u>93</u>	+44
•	•	•	
행정서기	<u>486</u>	<u>586</u>	+100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016</u>	<u>9,016</u>	+1,000
일반직 계	<u>8,016</u>	<u>9,016</u>	+1,000
·	·	·	
·	·	·	
행정주사	<u>1,030</u>	<u>1,187</u>	+157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99</u>	<u>598</u>	+199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104</u>	<u>198</u>	+94
·	·	·	
행정주사보	<u>1,224</u>	<u>1,382</u>	+158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500</u>	<u>720</u>	+220
•	•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u>155</u>	<u>183</u>	+28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 전주사보	<u>49</u>	<u>93</u>	+44
•	•	•	
행정서기	<u>557</u>	<u>657</u>	+100
•	•	•	
•	•	•	